

01

FTA 포커스



01. FTA 포커스

I. FTA 원산지검증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이대복 관세청 前차장
(경영학박사, 現김앤장 고문)

1) 머리말¹⁾

FTA 효과는 교역의 증대로 계약국 수출자의 이익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있다. 이러한 FTA 효과는 FTA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하여서만 확보되며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이 중요한데, 원산지 검증은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행위를 차단하고 제3국 산의 우회수입의 방지를 위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및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일반론적으로 FTA 관세특혜 적용 요건은 ① 계약당 사국 사람(기업)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거래자 요건) ② 수출입물품이 관세양허 대상품목(HS CODE 6단위)이어야 하고(품목요건) ③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고(직접운송원칙) ④ 협정에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원산지 요건) 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형식+실질), 적용신청 등 절차를 충족하여야 하고(증명/절차 요건) ⑥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5년) 보관하고 세관검증을 받아야 하는(검증요건) 등 이러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FTA 관세 특혜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다.

2) FTA 원산지 검증

FTA에서의 원산지 검증 방식은 ①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사후검증) ②서면 검증 우선 실시 후 현지검증을 실시하며(서면검증 우선) ③ 국내 수입자 검증 후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검증(수입자 검증/Importer focus)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수출국 세관 당국이 검증 주체가 되는 간접 검증과 수입국 세관 당국이 검증 주체가 되는 직접 검증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간접 검증이나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섬유·의류에 대하여는 간접 검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직접 검증의 길도 열어 놓고 있다(한·미 FTA 협정 제6조 및 미국 19CFR 10.1027(d)).

3) FTA 원산지검증 결과 및 권리구제 방법

세관에서의 원산지 검증 결과 FTA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정되면 그 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대우가 배제되어 기존에 면제 받았던 관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가산세부과 및 관련 수수료를 물게 된다.

1) 본 기고문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관세청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상품에 대하여는 과거 수입통관 건들을 세관에서 추적하여 추징 조치 등을 취하게 되고 향후 동일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가 중지될 것이다. 추가 행정적 조치로서, 수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수출자의 향후 수출품은 세관 검사 및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통관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며, 우리나라 FTA 특례법에 의한 처벌(벌칙, 양벌규정, 과태료)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이의제기,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청구,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법과 절차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간의 원산지 검증 결과 및 권리구제 사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4월 한·칠레 FTA 협정 발효 이후 다툼의 대상은 주로 원산지 증명서상의 기재내용, 대상품목 여부, 절차 위반, 서명 진위 여부 등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사례가 많았다. 이후 한·ASEAN FTA 발효(2007년 6월) 이후에는 형식·절차적 사항에 더하여 직접운송의 원칙, C/O의 유효기간 여부 등이 분쟁 사례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이후에는 한국세관과 미국세관의 직접 검증에 따라 세번 변경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의 실제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다툼 사례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기업 정보 제공범위와 세관이 어느 정도까지 관련 문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의 논란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이 있는 EU나 미국과 달리 우리에게 새로운 원산지 검증 체제의 순탄한 정착과 우리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FTA 특혜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하여, 상대국 세관당국, 특히 한국과 미국 세관당국의 업무협조 체제 구축 및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 운영 못지않게, 해당 기업을 도와주는 법무법인, 관세법인, 회계법인등의 FTA 전문가들이 세관당국과 수출입 기업간의 중간에서 얼마나 FTA 전문성을 발휘하여 win-win적인 solutions를 도출해 내느냐가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세관의 요구를 이해 못하고 무조건 관(官)을 비난, 원망하든가, 자문해주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가이드를 주어 해당기업이 줄지에 FTA 특혜 관세를 추징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4) FTA 원산지 검증 지원체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우리는 흔히 어느 국가든지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려면 여성 노동력을 참여시켜야 하고, 4만불대에 가려면 공직사회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청렴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이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 싱가포르 등 현재 세계 상위 소득 국가들을 보면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사회적 효율성이 높은 나라이고 그렇게 되도록 사회구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소득과 부가 높게 되나, 그렇지 못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는 나라는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은 요원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FTA에 대한 공적(公的) 지원체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의 거시적, 개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가. 전문가에 의한 원산지 관리 대행체제로의 유도

2003년 한·칠레 FTA 협정 체결을 시발로 정부는 기업 및 국민들에게 FTA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기업들이 보다 전문적, 기술적인 계도, 지도를 요구하면서 현재는 이런 지원책들이 기업들에 대한 1:1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FTA 원산지 업무의 전문가인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들이 이런 공공적 프로그램에 핵심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충분한 인력과 자원으로 FTA 체제에 발 빠르게 적응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잘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원산지관리시스템 상의 핵심 자료들이 기업내부정보인 원가자료와 관련되어 있다보니 외주 용역보다는 내부자체처리 시스템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체제 도입,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FTA 원산지업무를 가르쳐 준다거나, 전문성이 있는 관세사에게 용역을 주어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 해당 기업을 지도하여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효과는 보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흠뻑 향유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는 되지 않는 것 같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인력난, 잦은 이직률 등의 현실을 직시하면 복잡하고 난해한 이 FTA 업무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세무회계 분야의 가장 대리나 관세분야의 통관 대행처럼 FTA 원산지 관리 및 검증대비 업무는 FTA 전문가에 의한 대행체제를 갖추도록 법 또는 제도적 지원책 및 유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업무대행 체제가 갖춰져야 현재의 일시적 컨설팅 지원체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 운영 체제를 갖추게 되어 중소기업들에게 “한 끼 먹을 물고기가 아닌 평생 먹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제공”해 줌으로써 중소기업들에 제도적 장치와 장기적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현재의 단기간 컨설팅 지원방식에서 전환하여, 기업들에게 전문가 외주대행체제를 갖도록 유도하고, 그 대행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체제가 되면, FTA 컨설팅 시장의 왜곡현상과 비효율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혜택을 보는 한도 내에서 외부 전문 인력들에게 서비스로 보상할 것이고, FTA 전문인력은 전문성을 더욱 제고시켜 이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행할 것이다.

이는 선순환의 효과를 불러 일으켜 그동안 FTA 혜택을 누리기에는 자원이 부족하고 여건이 좋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에게까지 FTA 관세특혜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은 누구일까? HS 품목분류, 관세상 가격평가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관세사와 FTA 특혜원산지 제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획득한 원산지 관리사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이미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들이므로 타 인력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들의 지속적 비즈니스 영역이므로 신뢰감 있고 책임감 있게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나.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의 확산

원산지 관리시스템은 기업의 자재관리, 공정, 등의 자료, 회계기록등과 관련이 있으며, 웬만한 중소기업부터는 회계관리 시스템과 연관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가 가능한 전문성을 지닌 복잡한 시스템이다. 수작업으로 이 원산지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이고 그러한 기업들도 전산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관세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통하여 개발한 FTA-PASS 시스템을 2010년 9월부터 중소기업에 보급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애용하고 있다. 원산지관리란 FTA의 원산지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운영해야하는데, FTA-PASS는 관세행정기관인 관세청과 원산지전문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기업입장에선 비용부담 없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본 시스템을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전화상담, 현장지원과 같은 FTA-PASS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무역협회에서도 KNET을 통하여 개발한 FTA KOREA를 2011년 6월부터 중소기업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사용자 확보를 위해 당분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사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많은 민간업체들도 이 두 개의 시스템을 기초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원산지규정에 준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산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시스템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기업의 규모, 특성에 따라 개별 기업마다 활용에 적합한 시스템이 각기 다를 것이다.

이제는 관세청 또는 국제원산지정보원 같은 공적기관이 이러한 많은 원산지관리 전산 프로그램 간에는 성능·특성의 차이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 또는 인증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이 원산지 관리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제공하는 일종의 공적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원산지 확인서를 비롯한 원산지 관련 서류들이 전자문서 형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원산지 관련 전자 문서 유통”시의 규격표준이 2원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모듈 등을 개발하여 보급되고 있으므로 2원화의 갭은 무리없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다. 원산지 전문 인력의 육성, 적극 활용

원산지 관리 업무 및 검증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관세사, 원산지 관리사등 전문인력을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육성하고, 이 전문인력들을 우리기업들에게는 경험이 일천한 원산지 관리, 검증 분야에 적극 활용토록 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집행이 요구된다.

관세사회 및 관세청의 FTA 전문 관세사의 대폭 육성 방안 추진이 필요하고, 원산지 관리사의 양성, 적극 활용을 위한 국제원산지 정보원예의 적극적 역할 부여가 요망되고, 이에 따른 원산지 정보원의 다음과 같은 세부 대책 등의 추진을 기대한다.

원산지 관리사의 보수교육 상설화, 바쁜 직장인들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교육 장소를 전국적인 지역으로 확대하고 교육 시간도 과목당 교육이수제로 하여 전체 과목을 이수하면 시험 후 자격을 주는 방안, 주말반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다.

5)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대책을 앞서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우리 수출입 기업들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상대국 세관의 서류 요구사항의 철저한 관리, 유지

원산지 검증을 위한 상대국 세관의 서류 요구 사항은 기업이 제조나 수출하는 품목에 따라 다르므로 자기 기업에 특별히 해당하는 요구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상의 주요 정보사항(DATA ELEMENT)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번변경 기준 품목과 역내부가가치 기준 품목의 경우와 같이, HS 품목에 따라 원산지 검증시 요구하는 주요 서류가 다르다.

또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5년) 및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원산지 검증은 서류 검증이므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원산지관리 전산 시스템의 운영과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문가(로펌, 관세법인 등의 컨설팅 전문 업체)의 활용은 실제 상대국 세관의 검증시 검증담당 세관원들에게 신뢰를 주게 된다.

나.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능력 등 사전 체크 및 대비

FTA 원산지 검증은 수입자 우선 검증(Importer Focus)이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수입자들이 시행 초기 수출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하다.

수출입 계약시 수출자가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으며, 원산지 검증 대비 체제가 갖춰져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원산지 검증으로 인한 책임 소재 등 분쟁 발생시 피해보상 및 구상권 행사 방법 등 세세한 해결방안을 미리 수출입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는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소송이나 제3자 알선, 조정·중재로 가는 경우에는 과도한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 대기업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에서의 가장 취약점은 1차, 2차 벤더 등 협력업체에서 제공해야 할 자료의 관리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최종완성품 업체에서 자금 지원, 기술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등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별 문제 없이 최종완성품의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미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미국도 처음부터 이러한 완벽한 체제가 갖춰진 것이 아니고 NAFTA 시행 후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비하고 실제 검증 후 보완하여 오늘날 같은 체제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원산지 직접 검증에 대비한 사전 법적 검토와 현재 운영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예비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의 발효전까지 최대한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했던 인증의 잦아짐이 상대적으로 관대하였지 않나 생각되고 또 기업들은 그 당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준비했던 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도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 세관 당국이 직접검증을 수행할 경우 좀 더 엄격해진 원산지 검증 기준에 기업들이 당황해 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할 우려가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은 원산지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검증은 인증을 득한 자가 원산지 판정시 정확하게 FTA 원산지 규정에 따랐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잣대로 심사,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기업의 경우 담당 인력과 시스템이 있을지라도, 한번 잘못된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누적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FTA 원산지 검증 업무이다. 원산지 기준, 특혜 세율 등 FTA 정보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적시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시스템의 정합성 여부를 전문가에 의뢰하여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상의 원산지 판정 로직이 FTA 규정에 따른 로직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본격적 검증의 시기에 대비하여, 재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

라.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FTA-PASS, FTA-KOREA, 또는 전문 IT 업체들이 개발한 원산지관리전산프로그램을 자기 기업의 규모, 특성에 맞추어 도입, 운영하기를 권한다.

선택시에는 FTA 원산지 전문 관세사나 관세법인의 자문을 받아도 되고, 가장 무난한 방법은 동종업계 비슷한 규모의 기업 중 이미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업체에 문의하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특성상, 또는 운영 인력의 불확실성등 문제가 있으면 원산지 전문 관세법인, 관세사에게 동업문의 위탁 대행체제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한다. 비용이나 효율성면에서 더욱 뛰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